

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] <신설 2026. 3. 19.>

생태관광 인증의 기준(제25조의3제2항 관련)

대상	부문	평가항목
생태관광 상품	지역성	지역 고유의 특색 반영도 및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성
	상품성	생태관광 상품의 완성도 및 판매 가치
	친환경성	상품의 소재, 포장, 유통과정 등의 친환경성
탐방 프로그램	구성	지역 고유의 생태·환경 체감 및 생태교육의 기회 제공 정도
	운영	생태계 보전 촉진 및 친환경적 운영(안전·위생을 고려한 운영을 포함한다) 여부
	참여	지역사회의 참여기회 제공 및 탐방객 평가 환류 체계 확립 여부
탐방 체험시설	설치	친환경적 설계·시공 및 생태·환경과의 조화 정도
	운영	생태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정도
	체감도	지역 고유의 생태 체감 기회 제공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정도